

4. 사업계획

- 정수장 1개소(140,000톤/1일)
- 고성군 분담사업비 : 678백만원
 - 기부담금 : 149백만원
 - '98.부담금 : 128백만원
 - '98이후 부담금 : 401백만원
 - 사업기간 : '96년 ~ '98년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수도법 제52조의2(수도설치비용의 부담 등)에서 광역상수도 중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은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고성군에서는 1996. 11. 29일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사업 정수장 건설비용 부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총 사업비 47,483백만원에서 고성군 총 부담금은 678백만원으로 '96.'97년 기본담금 149백만원을 부담하였으며 98년 128백만원을 부담하여야 하며 98년이후 401백만원을 부담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및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재원이 없어 지방채 발행계획의 승인을 받고자 하므로 98년도 남강정수장 확장사업비 부담금 지방채발행 계획은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음.

6. 질의 및 답변

- 문 : 군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되지 않느냐
- 답 : 자체재원 부족으로 지방채 발행을 승인요청 하였음.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

- 1997. 11.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